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	1742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,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함

나. 이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,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,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사무명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

나.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

> **제3조(출연금)**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> 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추진 필요성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,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·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, 중앙 정부 및 각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함

다. 출연 사무내용

1)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
2) 지방행정 · 지방재정 · 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
3) 지방투자사업 (예비)타당성 조사·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
4)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

라. 출연 기관 개요

1) 연　　혁

- '84. 9월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(서울시 마포구)
- '86. 5월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
- '15.10월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(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)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
- '16.12월: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

2) 소재지: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(반곡동)

3) 위치도

4) 규 모

- 조 직: 원장, 부원장, 1감사관, 1센터, 1본부, 5실

▸ 기획조정본부, 자치행정혁신실, 자치분권제도실, 지방재정경제실, 지역포용발전실, 경영지원실,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

- 인 력

▸ 이 사 : 총 29명 (당연직 22명, 임의직 7명)

※ 당연직 이사: 원장 1, 행정안전부 4, 각 시·도 기획조정실장 17

▸ 직 원 : 정원 102명 / 현원 78명

(2020. 7. 31. 현재, 단위:명)

구 분	계	원장	연구직	관리직	전문직	투자분석직
정 원	102	공석	63	18	2	18
현 원	78	-	47	16	1	14
과부족	△24	△1	△16	△2	△1	△4

5) 지원시설

- 규　　모: 청사 건물 지상3층, 지하2층 / 연면적 5,742.68㎡
- 건축년도: 2016년('16.12월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)
- 시설현황

층별	주요 용도
지하2층	주차장, 체력단련실, 기계실, 전기실
지하1층	자료실
1층	로비, 행정국, 연구기획실
2층	임원실, 지방재정연구실, 대회의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
3층	자치행정연구실, 지역발전연구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, 여성휴게소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1) '21년 출연금 편성액(안): 250백만원　※ '20.7월말 현재

2) 산출근거

- 지방자치단체(17개) 출연금 총 4,150백만원
  - ▸ 특별·광역시·도(16개) 출연금: 각 250백만원
  - ▸ 세종특별자치시(1개) 출연금: 150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

> **제3조(출연금)**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2) 지방재정법

> 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편성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조직담당관 시정연구팀 심민욱 (☎ 2133-6747)

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1742

2020. 9. 7.
기획경제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8월 12일, 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】

-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(2020. 9. 7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Ⅱ. 제안설명의 요지(기획조정실장 조인동)

1. 제안이유

가.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,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함.

나. 이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,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,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사무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

나.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제3항

> **제3조(출연금)**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

> 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) 추진 필요성

-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·지방분권·지방행정·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,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·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

-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, 중앙 정부 및 각 17개 시·도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함

다. 출연 사무내용

1)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

2) 지방행정·지방재정·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

3) 지방투자사업 (예비)타당성 조사·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

4)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

라. 출연 기관 개요

1) 연　　혁

- 1984. 9월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(서울시 마포구)
- 1986. 5월 :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정
- 2015.10월 :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」 개정(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)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
- 2016.12월　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

2) 소재지　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(반곡동)

3) 규　모

- 조　직 : 원장, 부원장, 1감사관, 1센터, 1본부, 5실
  - ▸ 기획조정본부, 자치행정혁신실, 자치분권제도실, 지방재정경제실, 지역포용발전실, 경영지원실,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
- 인　력
  - ▸ 이　사 : 총 29명(당연직 22명, 임의직 7명)

※ 당연직 이사 : 원장 1, 행정안전부 4, 각 시·도 기획조정실장 17

▸ 직　원 : 정원 102명 / 현원 78명

(2020. 7. 31. 현재, 단위:명)

구 분	계	원장	연구직	관리직	전문직	투자분석직
정　원	102	공석	63	18	2	18
현　원	78	-	47	16	1	14
과부족	△24	△1	△16	△2	△1	△4

5) 지원시설

- 규　　모 : 청사 건물 지상3층, 지하2층 / 연면적 5,742.68㎡

- 건축년도 : 2016년(2016.12월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)

- 시설현황

층별	주요 용도
지하2층	주차장, 체력단련실, 기계실, 전기실
지하1층	자료실
1층	로비, 행정국, 연구기획실
2층	임원실, 지방재정연구실, 대회의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
3층	자치행정연구실, 지역발전연구실, 중회의실, 소회의실, 여성휴게소

마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1) 2021년 출연금 편성액(안) : 250백만원　※ ’20.7월말 현재

2) 산출근거

- 지방자치단체(17개) 출연금 총 4,150백만원

▸ 특별시・광역시・도(16개) 출연금 : 각 250백만원

▸ 세종특별자치시(1개) 출연금 : 150백만원

Ⅲ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동의안은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나.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 경위 및 연혁

○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·체계적인 조사·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1984년 9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(재)지방행정연구소가 설립되었음.

○ 이후 기관명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(이하 '연구원')로 변경되었고(1986.2),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(1986.5)과 같은 법 시행령(1986.9)이 제정·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의무가 법정화되었음.

○ 현재 연구원은 연구직 47명을 포함한 78명(정원 102명)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▸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, ▸ 지방행정·재정 및 지역발전 당면현안 조사연구, ▸ 지방투자사업 (예비)타당성 조사·평가 연구 및 용역수탁, ▸ 중앙·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고 있음.

○ 또한, 연구원의 세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, 17개 시·도의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정하고 있음.

- 2021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총액은 41억 5천만원으로,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각 2억 5천만원,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임.

< 한국행정연구원 출연금 요청서 요지 >

구 분	2020년	2021년
출 연 금	41.5억원	41.5억원
	‣ 16개 시도 : 각 2.5억원 ‣ 세종시 : 1.5억원	좌동
◉ 정책 개발 및 지원 ‣ 시·도 정책과제 ‣ 정책이슈리포트 ‣ 자치분권 발전과제 ‣ 자치분권 국정과제 ‣ 지방자치 선진화 과제	• 17과제 (시·도 당 1과제) • 17과제 (시·도 당 1과제) • 20과제 (행안부) • 14과제 (자체) • 10과제 (자체)	좌동
◉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등	• 39과제 등	좌동
◉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사업	• 5개 지방자치단체	좌동
◉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제안	• 국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정책 발굴	좌동
◉ 포럼	•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 구성 및 성과창출	좌동
◉ 공무원 역량 강화	• 시책 및 직무교육(5~6과정)	좌동
◉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정책협력	• 지방의정 아카데미(신규) • 지방의회 공동세미나 (지역학회 연계)	좌동
◉ 간행물 발간	• 지방자치이슈와포럼 • 지방자치정책브리프 • 지방의정브리프(신규) • 지방행정연구 • 인포그래픽스 (신규) • 세계지방자치동향 E-Book등	좌동

다.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의 적정성 여부

○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(이하 '법')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, 그리고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제3조 제3항)[1].

○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, 연구원은 출연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,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출연금요구서를 제출해야 함(시행령 제3조)[2].

○ 하지만, 서울시에 제출한 출연금요구서에는 연구원의 다음 회계연도 추정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누락되어 있고 서울시의 출연금 2억 5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만 기재되어 연구원의 전체 예산 규모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.

---

1) **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」 제3조(출연금)**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,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.
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**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」 제3조(출연금의 교부절차등)** ① 연구원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1.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
2.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
3.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

< 서울시 출연금 산출내역 >

구분		2021년	
		예산액(원)	산출기초
합계		250,000	
인건비 소계		187,500	
연봉		187,500	• 연구원 총액인건비(63억원) 3%
연구사업비 소계		50,000	
연구사업비	정책연구과제	15,000	•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
	시도현안과제	12,500	• 현안과제 개발사업 등
	학술행사 등	12,500	• 국·내외 세미나, 지방의정아카데미, 자치분권과 사회혁신 포럼,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등
	발간사업 등	10,000	• 지방행정연구, 지방자치이슈와포럼, 지방자치정책브리프, 지방의정브리프 등
일반운영비 소계		12,500	
일반운영비		12,500	• 일반수용비, 공공요금, 보험료 시설 및 청사관리비 등

○ 또한, 연구원의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2018년에 24억 6천 7백만원, 2019년에 16억 1천 7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계속 동일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.

< 출연금 중기 계획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세입 계 (일반회계+타당성조사특별회계)		21,179 (10,284+10,895)	24,199 (11,289+12,910)	24,263 (11,353+12,910)	24,575 (11,665+12,910)	24,741 (11,831+12,910)	24,908 (11,998+12,910)
출 연 금		7,204 (34.0%)	7,204 (29.8%)	7,204 (29.7%)	7,450 (30.3%)	7,550 (30.5%)	7,650 (30.7%)
	국가출연금	3,054 (14.4%)	3,054 (12.6%)	3,054 (12.6%)	3,300 (13.4%)	3,400 (13.7%)	3,500 (14.0%)
	광역시도 출연금	**4,150 (19.6%) (시도당 2.5억원) *세종 : 1.5억원**	**4,150 (17.1%) (시도당 2.5억원) *세종 : 1.5억원**	**4,150 (17.1%) (시도당 2.5억원) 세종 : 1.5억원**	**4,150 (16.9%) (시도당 2.5억원) 세종 : 1.5억원**	**4,150 (16.8%) (시도당 2.5억원) 세종 : 1.5억원**	**4,150 (16.7%) (시도당 2.5억원) 세종 : 1.5억원**
자체 수입		13,975 (66.0%)	16,995 (70.2%)	17.059 (70.3%)	17.125 (69.7%)	17.191 (69.5%)	17.258 (69.3%)

○ 한편,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서울시의 출연의무가 법정화되었고, 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.

- 연구원은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매년 정책과제 1건, 현안이슈 대응 리포트 1건(2018년부터 시작)을 각각 지원하고 있음.

< 서울시 정책과제 수행 현황 >

구분	연구과제명	부서
2015	서울시 물재생센터(하수처리장) 경영개선 방안연구	물재생시설과
2016	지방분권 실태 진단분석(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)	조직담당관
2017	주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제도 및 운영에 관한 비교 연구	재무과
2018	자치분권에 부합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	재정관리담당관
2019	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한 지자체의 재정확충효과 분석	재정균형발전담당관
2020	재정분석지표를 활용한 시.산하기관 통합적인 재정관리 추진	재정균형발전담당관

< 서울시 현안이슈 대응방안 리포트 지원 현황 >

구분	연구과제명	부서
2018	서울시립노인요양시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	어르신복지과
2019	승용차요일제에서 마일리지 제도로의 통합 및 활성화 방안	에너지시민협력과
2020	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연구	재정균형발전담당관

○ 서울시는 전부서의 의견을 들어 연구원에 의뢰할 정책과제와 현안이슈 리포트의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나, 참여율 저조와 선정 기준 미비로 연구원과의 협력 연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.

- 각 부서의 의견 중 가장 적절한 주제를 서울시가 아닌 연구원이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며, 2018년과 2020년에는 정책과제와 리포트에 대한 신청이 각각 1건이었음.

○ 또한, 서울시정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별도로 두고 충분한 자체 연구·조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연구원과 협력 연구에 대한 필요성 역시 낮은 편임.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서울시의 출연을 명시하고 있고, 연구원이 지방행정에 대한 오랜 연구 경험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, 중앙부처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.

○ 다만, 향후 이사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, 협력 연구에 서울시의 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선정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